



“세무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 주식변동조사]

Happy Tax! Happy Together!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모든 국민들이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운영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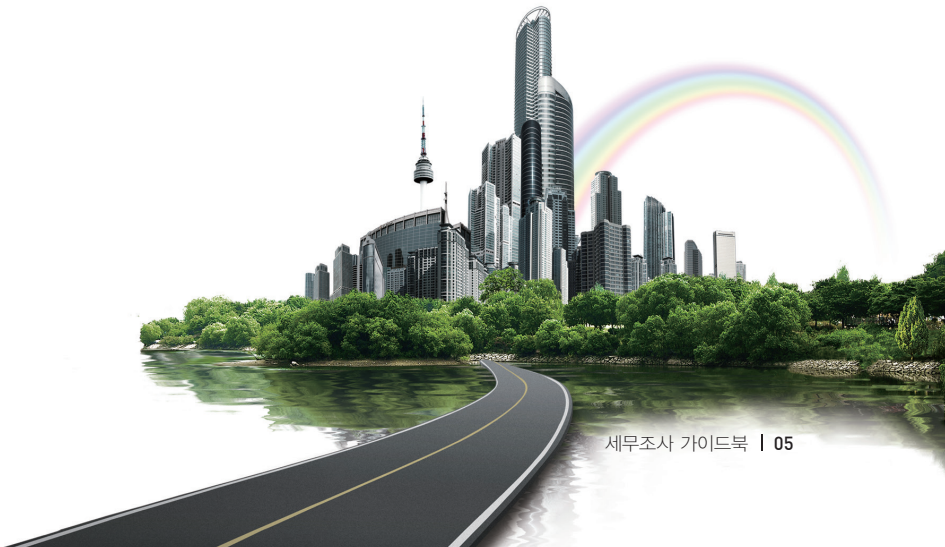
국세청장

목차

납세자권리헌장	3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6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7
1.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2. 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3.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4.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5.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6.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세무조사의 마무리 (세무조사의 마지막까지 배려하겠습니다)	17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고객평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1
1.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가이드북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지침서입니다.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 「세무조사 통지」 및 납세자권리현장을 보내드립니다.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마무리



-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발송합니다.
-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일시적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서 전화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 :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하고 불편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5** 가지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조사착수시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수령하십시오.

「세무조사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 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여 납세자권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서류 등에 대한 일시보관 요청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조사대상자는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비정기선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또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국세행정개혁
위원회(세무조사분과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귀하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증명서류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요청하며,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합니다.

-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질문·조사는 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장부·증명서류·물건」 등의 「제출·열람·해명」 요구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여 동일한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 의해 작성·보관 의무가 있는 거래계약서,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전산자료 포함) 등은 구두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 조사공무원의 질문, 조사,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7조)
- 조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사공무원의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공무원은 장부·서류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 ▶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있습니다.**
 - 일시 보관한 장부·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조사가 끝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조사진행 중에도 경영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은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보관중인 장부·서류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합니다.

- ▶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합니다.**
- ▶ **「조사와장 면담제도」를 통해 조사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의문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조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과세상 쟁점에 대해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납세자의 견해가 과세관청에 반영되도록 과장이나 팀장에게 서면으로 「납세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진실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 ▶ **자금의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 또는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하여야 조사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쉽습니다.**
- ▶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또는 수취하여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 및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입증서류, 상속 및 증여 관련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무조사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조사범위(세목, 과세기간)는 「세무조사 통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다만, 조사진행 도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조사범위의 확대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조사범위의 확대는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 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사범위 등을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에 의하여 문서로 통보해 드립니다.



조사범위 확대 사유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세무조사 통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 외국과의 정보교환, 과세사실판단자문 등으로 인해 일부분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납세자가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외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조사기간 연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편의적인 조사기간 연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도 해명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조사기간 연장 통지」에 의하여 문서로 통보해 드립니다.
- ▶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기피, 거래처 조사 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조사기간 연장 사유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 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사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질병, 사업상 심한 어려움 등 조사 중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세무조사 중지 통지」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중지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 세무조사 중지 사유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2.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6.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경우
7.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8.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등
9.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조사중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중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중지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잔여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에 의하여 조사재개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 시행

▶ 조사공무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기업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행위
4.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5.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6.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비밀유지의 의무

▶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령, 훈령,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사례 등 각종 세무정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법령정보



세무조사의 마무리

세무조사의 마지막까지 배려하겠습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세무조사 마지막 날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 컨설팅의 날」을 개최합니다.

▶ 조사종료일을 「세무 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과세항목, 과세근거, 사후 회계
처리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불복제도 및 납부 안내 등 세무조사 후속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조사와 관련이 없더라도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시면 조사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 세목별 결정(경정)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사후관리할
사항 등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보내드립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고지세액이 변경되거나 납세고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신 후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 또는 인터넷뱅킹 · ARS · ATM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하여 전자납부하시거나 신용카드 국세납부 사이트(www.cardrotax.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금액제한 없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16.1.31. 현재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후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통해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자금경색, 노동쟁의 등)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촉(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납세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세액이 5천만원(모범납세자는 5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국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포장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수상자는 2년간 면제

- 부여받은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개인이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한 경우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억원 한도)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 한도금액 = Min(적립된 포인트×10만원, 연간 5억원)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 사후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신 이후에는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 이의신청

- 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국무총리실 소속)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고지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고지서를 받거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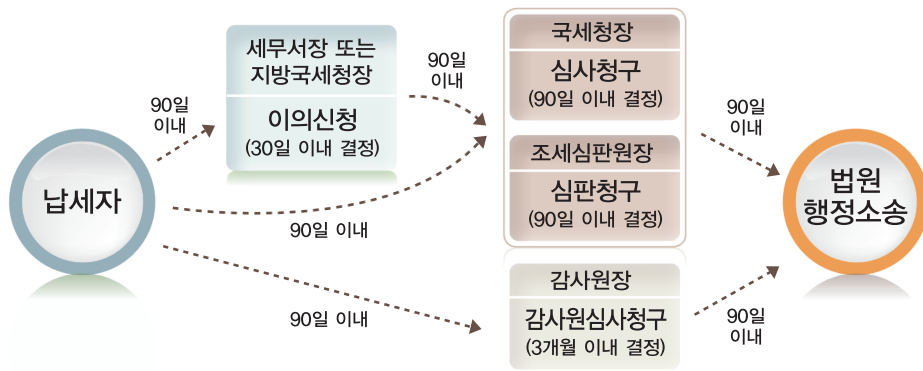
-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감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행정소송

-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조사관서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불복 절차도 |



| 각종 신청서 등 서식 |

다음의 각종 신청서, 체크리스트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정부3.0 정보공개 - 납세자 권리구제(지원)정보 - 세무조사가이드북)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서 식 명	비고
1	세무대리인 위임장	
2	장부·서류 등 반환요청서	
3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4	조기결정신청서	
5	징수유예신청서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8	이의신청서	
9	심사청구서	
10	심판청구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창구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문의사항	기관부서명	상담창구 또는 홈페이지
종 합 안 내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법 령 안 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 법령정보
종 합 상 담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세청은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하나 되어
국민과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www.nts.go.kr
2016. 05